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 확정 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

박 미 선*

<차례> _____

I. 서 론

III. 대상 판결의 검토

II.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IV. 결론 : 판결의 의미와 제언

주제어 :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보험수익자 확정,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국문초록> 대상판결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존속 중에 미리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4항에서 정한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법 규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에 따라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혼란을 줄이고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논의, 최종적으로 정해진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청구권 취득비율 및 그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첫째 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 문제이다. 종래 학설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립하여 왔고, 대상판결은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의 문언과 취지를 근거로,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 생명보험협회, 변호사.

- 논문접수일(2025.10.12), 심사개시일(2025.10.14), 게재확정일(2025.10.24)

우, 그 시점에 생존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확정하였다. 이는 상법상 규정의 공백 또는 불명확한 점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법 규정의 적용범위 확장을 통하여 실제적인 보험금청구권 분쟁의 해결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쟁점은 보험금 분배 비율의 기준이다. 이에 관하여 보험수익자들이 민법상 분할채권관계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상법 규정에서 '법정상속인'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대상판결에서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일치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쟁점은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다. 이 쟁점은 대상판결에서는 직접 쟁점이 되지 않아 명확한 태도를 알기 어려우나, 종래 법원의 태도에 의할 때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에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의 쟁점 이외에 추가로 개별 보험수익자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안이 대상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당해 사안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으로서 순차 사망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의 흠결을 보충할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법 개정 또는 표준약관 보완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험수익자의 확정 시점 또는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의 지정방식을 명문화할 필요성에 관하여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금 귀속 문제에 대한 예방적 해결기반을 마련하고 생명보험법리의 일관된 적용은 물론 실무적 안정성 강화라는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 서 론

상법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이른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를 인정하면서, 계약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이나 인간관계 등 각종 사정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¹⁾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생명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위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1) 이동원, 권순일, 「주식 상법[보험]」,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 1001면.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 해결이 주로 문제되어 주로 사망보험이나 혼합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법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3조 제2항 및 제4항).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한 경우라도 장기간에 걸친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 존속 중 보험수익자가 사망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규정하였고 또 이러한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도록 함으로써(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 보험수익자 확정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미리 지정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시점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범위가 각각 달라질 경우, 어느 시점에서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종래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선고된 대법판결에서 위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법판결 및 원심 등의 사실관계와 보험수익자 확정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추가로 수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보험금 분배의 문제와 해당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그에 따른 차이점 등을 순차적으로 다뤄본 후, 판결의 의미와 나아갈 점에 대하여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II.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1. 사건의 경위

甲과 乙은 2005년 9월경 혼인하였다가 2019년경 6월경 이혼하였고, 丙은 2006년 10월경 甲과 乙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甲과 丁은 2020년 1월경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6월경 이혼하였다.

甲은 2018년 11월경 피보험자를 甲, 만기 및 생존수익자를 甲, 사망수익자를 丙,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금을 5천만 원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결하였다.

丁은 甲과 이혼한 직후인 2020년 6월경 甲과 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丙에게 흥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하였고, 이후 휘발유를 아파트 여러 부분에 뿌리고 방화하였으며 화재 발생 후 甲을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 (원심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丙은 화재 발생 전에 먼저 사망하였고, 甲은 화재 발생 후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인 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丙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 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심에서 甲의 법정상속인인 부모(戊 등)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피고 보험자는 원심에서 ‘동일한 채권에 대해 피공탁자들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하여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乙과 참가인(戊)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

2.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심²⁾에서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甲의 사망과 보험수익자 丙의 사망의 선후관계가 직접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는 보험수익자 丙의 법정상속인인바 ①피보험자 甲의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 丙이 생존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았고, ②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배척되었다.

제1심 법원은, ①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그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피보험자 甲이 사망하였을 당시 보험수익자 丙이 이미 사망한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9798 판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甲이 사망 전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보험수익자였던 丙의 상속인인 원고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②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 甲이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약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들어 (甲과 丙의 사망순서와 무관하게) 원고 乙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³⁾에서는 먼저 보험수익자 丙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甲의 사망 선후에 관하여, 부검감정서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험수익자 丙은 화재발생 전에, 보험계약자 甲은 화재발생 후에 각 사망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이후 보험수익자 판단에 관하여, 지정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⁴⁾에서, 보험수익자 丙의 사망 당시 丙의 상속인인 甲과 乙이 보험수익자가 된다(甲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함)고 판시하였다. 그 후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갖는 甲이 사망함에 따라 甲의 상속인인 참가인 戊 등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최종) 확정되는 보험사고 발생(피보험자 甲 사망) 내지 보험계약자 사망(보험계약자 甲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乙과 참가인들 戊 등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비율에 관하여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 법리(민법 제408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甲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함으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결국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원고 乙은 보험금 중 1/2을, 참가인들 戊 등은 甲에 대한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중 각 1/4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판결

4) 이러한 내용의 원심의 전제는 대상판결에 실시되어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결국 대법원은 지정 보험수익자인 丙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丙의 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동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丙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丙의 상속인인 원고 乙과, (丙의 상속인인 甲의 상속인, 즉 순차 상속인인 참가인 戊 등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丙과 甲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 乙과 참가인들 戊 등으로 확정되고, 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 乙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이,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4 지분이 각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Ⅲ. 대상 판결의 검토

1. 대상판결의 쟁점

(1)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

대상판결에서는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심에서 지정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지정보험수익자의 사망당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과는 달리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때 상법 제 733조 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및 취지(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널리(유추)적용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로 결정하였다.

(2) 보험금의 분배(수익권 취득비율)

대상판결에서는 지정 보험수익자인 丙의 상속인인 원고 乙과, 丙의 순차 상속인(丙의 상속인 중 1인인 甲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 戊 등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원고 乙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이, 참가인들 戊 등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3)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대상판결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명시적으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인 甲과 乙이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들은 민법상 분할채권 법리에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을 균등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후,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甲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기존 판례의 태도와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인 乙의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인 戊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보통약관 제13조의 적용범위 해당여부

대상판결의 원심 및 제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분으로, 보험자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3조⁵⁾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약관의 문언적 해석과 위 약관 내용이 상법 제733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당해 사건이 적용되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해당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자 및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 문제

(1) 종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 논의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상법 제733조 제3항 제2문)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법 제733조 제4항)에 법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 사망 시점과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점(상법 제733조 제4항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다르게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종래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⁶⁾

1설은 민법상 상속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보험수익자사망시설)⁷⁾이다. 이 견해는 상법 제733조 제4항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일반적 언어관용에 비추어 상속인이라는 개념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잠정적’으로(일

5)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6) 장경환,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불행사시의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 「보험학회지」 제41권, 한국보험학회, 1993, 232-238면. 양희석,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법적 문제”, 「보험법연구」 11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227-233면.

7)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768-769면. 최준규,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18-13>, 보험연구원, 2018, 49-52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2판, 박영사, 2020, 850면.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918면.

응)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향후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최종적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변동 가능한 잠정적 지위에 관하여 본래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보험수익자를 재지정·변경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불확정적인 것인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그러한 추상적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⁸⁾

이에 대하여 2설은 상법 제733조 제2항 제2문에서의 보험계약자의 사망이나 상법 제733조 제4항의 보험사고 발생은 상법이 새로이 보험수익자를 정해주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사망시설(보험사고발생시설)이라 칭한다.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의 사망(또는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수익자의 재지정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이고,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재지정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이며 그 당연한 결과로 (보험수익자의 지위의 상속이 아니므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상법 제733조 제2항 제2문(또는 상법 제733조 제4항)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시취득 한다고 해석한다.⁹⁾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확정이 상법상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더라도 2설(보험계약자사망시설)에 의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한 상속인 일부의 상속관계가 배제되어 민법상 상속법리와의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¹⁰⁾,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반드시 승계취득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과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¹¹⁾을 고려할 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은 보험수익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1설)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8) 양희석, 위의 논문, 229면.

9) 장경환, 위의 논문, 237면.

10)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甲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인 丙의 상속인 중 생존자가 직계존속 乙뿐이므로 이 사건 원고인 乙만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보험수익자인 丙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수익자를 확정할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의 법리 및 순서와 동일하게 丙의 직계비속인 甲과 乙이 상속인이 되고 이후 甲의 사망으로 갑의 직계존속인 戊 등도 상속인이 되므로 민법상 상속법리와 결론이 달라지게 되고, 대상판결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11) 한기정, 위의 책, 769면. 최준규, 위의 논문, 49면.

(2) 대상판결 이전의 하급심 판결의 입장

대상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에서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을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다(위 1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4619판결에서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 그 사람이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미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보게 되는데(상법 제733조 제3항), 이때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¹²⁾

한편,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는 특별한 근거의 적시 없이, (만약) 피보험자 甲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보험수익자인 丙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甲이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였던 丙의 상속인인 원고 乙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시점(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수익자를 확정하는 태도(위 2설)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심 판결에서는 (제1심에서의 사실관계와 달리 보험수익자 丙과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甲의 사망의 선후관계를 밝히면서) 지정 보험수익자 丙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甲 사망 전에 사망함에 따라 ‘丙의 상속인인 원고 乙과 甲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보험수익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1설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 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甲이 사망함에 따라 甲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수

12) 이 판결에서는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후, 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데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도 보험수익자로 판단하여, 그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수익자 확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과정은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대상판결의 입장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양희석, 위의 논문, 229-230면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보험수익자 확정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보험수익자 사망시(위 1설)를 취하였다고 해석되는 부산지방법원 1990. 6. 1. 선고 90나667 판결과 1990. 8. 22. 인보험 분쟁조정위원회 90조정-20 결정이 있으나(양희석, 위의 논문 230, 장경환, 위의 논문 230), 위 판결 및 결정문에서는 보험수익자 사망시라는 기준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1991년 1월 1일 이전으로 현행 민법과 상속순위가 다르므로 이 글의 본문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익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보험사고 발생(피보험자 甲사망) 내지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는 원고와 참가인들이다라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보험수익자를 확정하여 위 1설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입장 및 의미

대상판결에서는 원심의 전제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판시하였으나, 보험수익자 확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원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4항이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의 원래 의사를 우선 고려하는 취지라고 판시한 후, 그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확대하여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입장 및 의미에 관하여 ‘보험수익자 사망시설’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기존 하급심 판결례만 있었던 ‘보험수익자 사망시설’을 대법원에서 처음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¹³⁾

한편, 대상판결에 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험금의 귀속을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고히 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범위가 명확해졌고, 보험수익자가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¹⁴⁾

13) 이준교 “최근 대법원 판례로 살펴본 ‘기존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을 중심으로.”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556호, 생명보험협회, 2025, 16면.

14) 손민숙,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2025. 4. 14. 제15-17면. 위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의 재지정 없이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생존해 있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및 차순위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됨으로써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귀속시키는 모순을 방지하고 보험금 귀속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일단 귀속되었다가 그 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살펴보면, 대상판결은 원고 乙과 참가인들 武 등이 최종적인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1설의 입장인 원심 판결과 같으나, 상세한 이유의 설시 없이 ①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범위를 확장하였거나, ②위 규정들이 적용되는 범위를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확대(유추적용)한 면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보험수익자 확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기존의 견해대립이나 판단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절충적으로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을 가장 넓게 적용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보험수익자 확정에 관한 규정상 흠결을 메우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견해의 대립 또는 사망 선후에 따른 분쟁 등 사실관계에 따른 혼란 없이 상속인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해석된다.

결국, 대상판결에서는 상법상 규정의 공백 또는 불명확한 점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논의가 아닌,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범위 또는 위 규정의 ‘상속인’의 범위 해석의 문제로 판단함으로써 실제적인 보험금청구권 분쟁의 해결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보험금의 분배(보험금청구권 취득비율)

(1) 보험수익자들의 상속인들의 보험금 분배의 문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이 (유추)적용되어 보험수익자로 정해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이들 사이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실제로 취득할 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균등하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다.

상속하게 되고, 그 상속인들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보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귀속시키는 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위 평가는 단지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평가라고 해석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속인들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는 견해(균등비율설)가 있다. 상속인들이 새로운 수익자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법 제733조 제3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된 결과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제40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¹⁵⁾ 이에 대하여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최종 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의 분배비율을 정하여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상법 제733조 제4항이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상속인들의 수익권 취득비율은 ‘상속법의 법리’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본다.¹⁶⁾¹⁷⁾

종래 대법원 판결¹⁸⁾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상속인은 상속분의 범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직접 지정하지 않고 상법상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도, 법의 규정(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이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 정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정해진 수인의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의 분배에 참가하는 한, 그 보험금의 분배도 상속분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¹⁹⁾가 있고, 이에 찬성한다.

(2) 대상판결의 입장 및 의미

대상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 분배 비율에 관하

15) 한기정, 위의 책, 769면. 최준규, 위의 논문, 57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日最高判 1993(平成5). 9. 7.(民集47.7.4740)

16) 장경환, 위의 논문, 239면, 최준규, 위의 논문, 64면. 양희석, 위의 논문, 239-239면.

17) 최준규, 위의 논문, 63면에서는 단계적 균등비율설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수인의 상속인들 간에는 균등비율설에 따르지만 순차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그 균등비율을 다시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학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에서만 주장되고 있다고 한다.

1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19) 장경환, 위의 논문, 239면.

여,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고, 확정된 보험수익자들은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 乙은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을, 참가인들 戊 등은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르는 것으로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일치하는 판단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청구권 비율에 관하여, 최종 보험수익자로 확정되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한 것이며, 보험수익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²⁰⁾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평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²¹⁾

4.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1)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지출하므로 그 생명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인지 그 성질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후술하듯이 상속인들이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의 분배비율 뿐 아니라 상속포기, 상속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명칭과 같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중 ①보험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20)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한 예시로 위 각주 9)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을 기재하였다.

21) 대상판결에서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청구권의 분배비율은 원심과 대상판결이 일치하여 별도로 수정하여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원시취득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다.²²⁾

또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중, ②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추상적으로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은 자기의 고유권리로서 취득하는 원시취득으로서 고유재산이라고 본다²³⁾.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정행위의 효과, 즉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서 생겨나는 소유권의 취득이나 보험계약자로부터 취득한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처음부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기존의 판례²⁴⁾ 역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다²⁵⁾.

2)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동일)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원시취득하는지, 보험수익자가 취득한 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22) 박세민, 위의 책, 912면,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241면, 양희석, 위의 논문, 235면

23) 박세민, 위의 책, 912면, 한기정, 위의 책, 772면, 양희석, 위의 논문, 234-236면.

2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2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종래 판례²⁶⁾의 입장으로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적 견해는 대체로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상속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점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²⁷⁾ 다만, 이에 대하여 사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때의 보험계약자점 피보험자의 의사 역시 상속인들에게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의사였다는 이유로, 또는 이 경우만 상속재산으로 별도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경우도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²⁸⁾

생각건대, 유족의 생활보장재원을 확보하여 준다는 의미의 생명보험의 보장적 기능 및 최근의 경향, 상속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근거나 취득 경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을 달리 볼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점 피보험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후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이 사건 원심과 대법판결의 판단

이 사건 원심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험수익자 丙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甲 사망 전에 사망함에 따라 丙의 상속인인 원고 乙과 甲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 때 甲이 피

2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27) 박세민, 위의 책, 912면, 양희석, 위의 논문, 234면, 최준규 위의 논문 55면.

28) 최준규, 위의 논문, 55면, 한기정 위의 책, 774면.

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다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참가인 戊 등에 보험금청구권이 상속되므로 이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원고 乙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참가인들 戊 등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으로 각 성격이 다름).

대상판결에서는 보험수익자로 최종 확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甲과 戊 등)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733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하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로 판단하고 원고 乙과 참가인들 戊 등을 보험수익자로 확정하였으므로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²⁹⁾에 비추어보면, 대상판결에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사료된다(乙, 戊 등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고유재산으로 성격이 동일).

(3) 원심과 대상판결의 의미

원심의 판단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보험수익자 사망시라는 판단 하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³⁰⁾을 논리적으로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바, 수긍이 간다.

또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확정의 기준시점이나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선결적 판단과 무관하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논리적 정합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위 (1)에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보험수익자 사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을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는 견해에

2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3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등

따르면 보험수익자들인 乙과 戊 등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한 것이며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대상판결에서 직접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4)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추가적 문제(참고사항)

대상판결에서는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원심과 대상판결에서 각 보험수익자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해석 또는 가정한다면, 이러한 점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승계한 것인지의 문제는 확정된 각 보험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구체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보험수익자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에 차이가 없고 모두 상속인들인 보험수익자들이 취득한 고유재산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각 보험수익자들의 만약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취득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험금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원심 판단의 해석과 같이 각 보험수익자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戊 등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잠정적 보험수익자였던 甲의 상속인으로서 그들(戊 등)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만약 참가인들 戊 등 중 일부 또는 전부가 甲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먼저 행사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IV. 결론 : 판결의 의미와 제언

대상판결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존속 중에 미리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4항에서 정한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법상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종래 하급심 판결레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되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여 법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있어 보험금청구권 귀속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최종 확정된 보험수익자가 원고 乙과 (사망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참가인 戊 등이라는 결론은,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정하여 판단하는 입장의 원심과 결론에 있어서 같다. 하지만 대상판결의 법리와 취지가 유지되려면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도 일관된 결론 또는 해결방법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대상판결에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고,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적용범위 확장이나 유추적용 여부 등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과연 대상판결의 결론이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른 사안³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남긴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를 이미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법

31) 만약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시간이 경과한 뒤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였고, 보험수익자의 사망과 보험계약자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상속관계를 변경시킬 만한 사정(출산, 입양, 이혼, 재혼 등)이 개입되거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지정 보험수익자와 직접 혈연관계가 아닌 자(이복형제 등)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과 같이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를 보험수익자로 확정하면서 그것이 보험계약자의 원래의 의사를 고려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상속인인 보험수익자 확정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제733조 제3항(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야 하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기도 한 경우는, 엄밀히는 상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거나 상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법 규정의 적용에 따른 해결 또는 당사자 의사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을 개정하는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미리 결정하거나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완방법으로 다음의 4가지를 검토해볼 수 있다. ①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보험수익자 확정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재해두거나³²⁾, ②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비하여 2차적·보충적으로 후순위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 ③계약체결 단계부터 보험수익자의 사망시 보험계약자가 조속히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안내 절차를 신설하고, ④제도적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의 개정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32) 현재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규정을 두어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 수익자 확정을 위한 보충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충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위 약관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보충규정을 추가(①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재지정권을 행사, ②보험수익자 사망시를 기준으로 상속인 모두 포함하거나 상속인이 포함되지 않는 기준 마련 등)하는 방법으로 약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제4호 및 제5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사법연수원, 2016
-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2판, 박영사, 2020
- 지원림, 「민법강의」 제19판, 홍문사, 2021
-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 이동원, 권순일, 「주식 상법[보험」,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

[논문]

- 김은경, “보험수익자 지정여부와 그 이해관계의 의미”, 「법학논총」 제21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박은경,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24
- 서고은,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찰 - 보험수익자의 결격사유와 보험금의 분배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4권 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손민숙,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2025. 4. 14.
- 양희석,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법적 문제”, 「보험법연구」 11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 이준교, “최근 대법원 판례로 살펴본 ‘기존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을 중심으로 -”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556호, 생명보험협회, 2025
- 장덕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 보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

300934 판결 -”,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24

장경환,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불행사시의 보험수익자의 확정시점”, 「보험학회지」 제41권, 한국보험학회, 1993

정진욱,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7호 제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정진욱,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확정)에 관한 해석”, 「재산법연구」 제41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25

최준규,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18-13>, 보험연구원, 2018

<Abstract>

The Issues in Determining Insurance Beneficiaries when the Policyholder Dies Prior to Exercising the Right of Re-designation After the Beneficiary's Death

Park, Mi Sun*

This Supreme Court ruling addressed the issue arising in life insurance where the designated beneficiary passed away during the insurance term, but the policyholder died before exercising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or the insured event occurred before such exercise. Additionally, it examined cases where, at the time of the policyholder's death or the insured event, no heirs of the designated beneficiary were alive. The court clarified the timing and method for determining the "heirs of the beneficiary" as stipul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This ruling is significant as it contributes to reducing legal confusion and preventing disputes in similar future cases.

In reaching this conclusion, the court's reasoning raises several key issues relating to the timing for determining the heirs of the beneficiary, the method of distributing the insurance proceed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to such proceeds.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reference point for confirming the heir of the beneficiary. Traditional theories have been divided between viewing the critical time as either the death of the beneficiary or the death of the policyholder. The precedent, interpreting the wording and intent of Article 733(3) and (4), held that if the policyholder dies or the insured event occurs before exercising the right of redesignation, the heirs or successive heirs of the designated beneficiary who are alive at that time shall be confirmed as the beneficiaries. This approach effectively filled a legislative gap and offered a practical solution to disputes regarding claims for insurance proceeds.

* Attorney at law,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The second issue concerns the distribution ratio of the insurance proceeds. Competing views exist as to whether each beneficiary acquires an equal share under the Civil Act's rules on divisible claims, or in proportion to their statutory inheritance shares as implied by the Commercial Act's reference to "legal heirs." The court adopted the latter view, recognizing that heirs acquire the proceeds according to statutory inheritance shares, consistent with prior Supreme Court rulings.

The third issue involves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claim to insurance proceeds. Although the precedent did not explicitly address this matter, prior case law suggests that where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designate their heirs abstractly as beneficiaries, the claim vests originally as part of the heirs' own property. Conversely, where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designate themselves as beneficiarie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proceeds reverts to the insured's estate upon their death. This distinction implies that variations such as partial renunciation or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nce may affect the distribution and legal outcome in specific cases.

Ultimately, the complexity of the present case stems from the absence of explicit legislative guidance regarding sequential deaths and the lack of a defined mechanism to supplement the policyholder's or insured's presumed intent. Accordingly, this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such as amending the Commercial Act or revising the standard policy terms to explicitly stipulate the timing and method for determining heirs as beneficiaries. Such measures would provide a preventive legal framework for resolving post-mortem beneficiary designation issues in life insurance, thereby enhancing doctrinal consistency and practical stability in insurance law.

Key Words : Article 733(3) and (4) of the Commercial Act, Right to re-designate the insurance, Heirs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Determination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